

농산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61호
------	------

<p>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--

제 출 자	건설도시국장
제출연월일	2023. 4. 11.

예산실장 심사필

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61호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4. 11.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제안설명자 : 산림공원과장

1. 제안이유

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험 시설 이용예약, 체험료 징수 및 반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, 체험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 체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험의 세부 내용 조항 신설(안 제10조,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감사실-2711(2023.3.16.)호]
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복지정책과-9441(2023.3.21.)호]
- 3) 규제심사 : 규제대상 아님 [예산실-2845(2023.3.8.)호]
- 4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3. 03. 08. ~ 2023. 03. 28. 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: 충청남도 농촌활력과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“체험료”란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에서 베리쿠킹랩 등 유료 프로그램
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 (체험예약)** ①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
려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, 방문 및 전화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.
② 베리쿠킹랩 등 유료 프로그램을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후 3일
이내(체험일 전 3일 이내 예약한 경우는 체험일 전날까지)에 체험
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
소한 것으로 본다.

제11조(체험료 등) ① 딸기향 농촌테마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.

- ② 시설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베리쿠킹랩 등 유료 프로그램

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,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.

③ 체험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산림공원과장 김 종 진
	공원조성팀장 김 영 선
	담당자 변 영 경 (746-6168)

[별표 1]

체험료(제11조 관련)

구분	기준	체험료		비고
		개인	단체	
힐링생태체험관	실내놀이체험관	무료	무료	
딸기테마관	VR체험			
딸기테마관 베리쿠킹랩	데코레이션 (푸드아트, 퐁듀초콜릿 등)	3,000원	3,000원	
	쿠킹클래스 (샌드위치, 오믈렛, 참쌀떡 만들기 등)	5,000원	4,000원	- 특별한 재료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비 등을 추가징수 할 수 있다.
	베이킹 클래스 (케이크, 피자만들기 등)	10,000원	9,000원	

[별표 2]

체험료 반환기준(제11조 관련)

구 분	반 환 사 유	반 환 기 준
공 통	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	전액 환급
1.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: 전액 환급		
2.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		
가. 체험일 직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		전액 환급
나. 체험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체험일 당일 참석하지 않는 경우		전액 미환급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1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2. “체험료”란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에서 베리쿠킹랩 등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</u></p> <p><u>제10조 (체험예약) ①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, 방문 및 전화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베리쿠킹랩 등 유료 프로그램을 예약한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(체험일 전 3일 이내 예약한 경우는 체험일 전날까지)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<u>제11조(체험료 등) ① 딸기향 농</u></p>

< 신 설 >

춘테마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.

② 시설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베리쿠킹랩 등 유료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,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.

③ 체험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1]

체험료(제11조 관련)

구분	기준	체험료		비고
		개인	단체	
힐링생태체험관	실내놀이체험관	무료	무료	
딸기테마관	VR체험			
딸기테마관 베리쿠킹랩	데코레이션 (푸드아트, 풍류초콜릿 등)	3,000 원	3,000 원	- 단체란 15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일괄 신청하는 일행을 말한다. - 특별한 재료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비 등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.
	쿠킹클래스 (샌드위치, 오믈렛, 찹쌀떡 만들기 등)	5,000 원	4,000 원	
	베이킹 클래스 (케이크 피자 만들기 등)	10,000 원	9,000 원	

< 신 설 >

[별표 2]

체험료 반환기준(제11조 관련)

구분	반 환 사 유	반 환 기 준
공통	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	전액 환급
1.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: 전액 환급		
2.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		
	가. 체험일 직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	전액 환급
	나. 체험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체험일 당일 참석하지 않는 경우	전액 미환급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세 출 :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
 - 세 입
 - 자체수입(세외수입)
- : 제11조(체험료 등) ② 시설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베리쿠킹랩 등 유료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,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.

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세 출 : 베리쿠킹랩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비
 - 기간제근로자 인건비, 공공요금 및 재료비 등 운영비
- 자체수입 : 베리쿠킹랩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

나. 추계결과

- 2023년도

구	분	세	부	내	역	금액(천원)			
계						44,344			
인	건	비	○ 86,720원 × 1명 × 200일			17,344			
사	무	관	리	비	○ 스티커, 포장지 등 구입	6,000			
공	공	운	영	비	○ 전기 및 수도요금	4,000			
재	료	비	○ 쿡킹재료 구입			12,000			
자	산	및	물	품	취	득	비	○ 오븐, 전자레인지 등 물품 구입	5,000

※ 2023년도 인건비는 2023년 5월 ~ 12월(8개월) 사역비용으로 추계
 ※ 재원조달방안 : 시비

3. 작성자

산림공원과장 김 종 진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	
세 입	44,344	56,868	57,704	58,565	59,452	276,933	
지 방 세	24,344	23,868	24,704	25,565	26,452	124,933	
세 외 수 입	20,000	33,000	33,000	33,000	33,000	152,000	
세 출	44,344	56,868	57,704	58,565	59,452	276,933	
인 건 비	17,344	27,868	28,704	29,565	30,452	133,933	
사 무 관 리 비	6,000	8,000	8,000	8,000	8,000	38,000	
공 공 운 영 비	4,000	6,000	6,000	6,000	6,000	28,000	
재 료 비	12,000	15,000	15,000	15,000	15,000	72,000	
자산및물품취득비	5,000	0	0	0	0	5,000	
재 원 조 달	44,344	56,868	57,704	58,565	59,452	276,933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 조 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44,344	56,868	57,704	58,565	59,452	276,933
	지 방 세	24,344	23,868	24,704	25,565	26,452	124,933
	세 외 수 입	20,000	33,000	33,000	33,000	33,000	152,000
	공 모 사 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 민자 등)							

※ 인건비는 논산시 생활임금 기준(매년 약3% 증가) 예상 추이 반영
(2024년도~2027년도의 경우, 기간제근로자 312일/년 사역 예상)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